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격리면제 국가 등 안내

1. 관련 : 중앙방역대책본부-9284(2022.3.11.)
2. **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(중대본 3.11.)에 따라 국내·외 예방접종완료자단계적 격리면제 확대에 관하여**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**각 기관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 - **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대상 및 적용 시점**
 - **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: 3.21.(월) ~**
 - *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(COOV)에 등록한 자
 - **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: 4.1.(금) ~**
 - *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한 자
 - **예방접종완료자 확인 방식**
 - **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**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상 관련 정보 자동 연계
 - **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는** Q-CODE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
 - **예방접종완료자 기준**
 - **WHO 긴급승인 백신* 활용하여 2차 접종 후(얀센 1회)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**
 - * 화이자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, 얀센, 노바백스, 시노팜(베이징), 시노백, 코비실드, 코백신, 코보백스
 - **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 예외 대상(3.21.부터 적용)**
 - **국가별 위험도 분석 등에 따른 관계부처 상황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4개국(파키스탄, 우즈베키스탄, 우크라이나, 미얀마)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격리를 유지**
3. 아울러 **4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미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입국 단계에서의 연락처·주소 유선확인 절차와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를 중단하니 원활한 시행을 위한 안내와 조치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 끝.

교 육 부 장



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고등외국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주무관

박현식

행정사무관

김미희

코로나19대응 전결 2022.3.14.
학교상황총괄 신광수
과장

협조자

시행 **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** ((2022.3.14.)) 접수 ()
과-899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3-2 / <https://www.moe.go.kr>
동 산업자원통상부 (어진동)

전화 044-203-7140 전송 044-203-7079 / root77777@korea.kr / 비공개